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7810      |
| 의 퇴 인 | 권향엽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4. 14. |
| 추계번호  | 26C1708      |

#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·보급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,100만원(연평균 62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발달장애인 식별지표<br>개발·보급<br>(안 제12조의2) | 17   | 14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31 | 6.2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2조의2<br>(발달장애인 식별<br>지표) |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·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2조의2<br>(발달장애인 식별<br>지표) | ○    | ○ 성평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법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·보급할 경우 연구용역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피해자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고시로 공표하고 있으며, 해당 지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함
  - 「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」는 2023년 제정됨
    - － 동 고시에 따르면,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  - 해당 고시 마련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2021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, 이후 활용 교육을 위한 해설서를 발간함
    - － 2021년에 수행된 「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(성매매)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식별 기준 제시」 연구용역에 1,700만원이 소요됨
    - －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「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담당자 교육자료 해설서」를 마련하였으며, 1,400만원이 소요됨
- 본 추계서는 성평등가족부의 관련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 사례를 준용하여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건, 해설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 1건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  - 개정법률 시행 첫해에 식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차년도에 해설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- 연구용역 단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관련 연구용역 단가를 준용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·보급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,100만원(연평균 62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개발·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식별지표 개발 | 17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| -   |
| 해설서 발간  | -    | 14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| -   |
| 추가재정소요  | 17   | 14   | -    | -    | -    | 31  | 6.2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(직무대리)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제정     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assembly.go.kr |